

#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 중 화환  
· 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함(안 제53조의2).
- 수협중앙회의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
위임 근거를 명시함(안 제152조).

### 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 
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